

가) 경력환산율표의 적용

(1)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

(가) 경력의 증명

-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「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」(「보수지침」별지 제1호 서식)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
※ 「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」는 호봉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·보존하여야 함
-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
※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
-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음
(「공무원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」 제4조 및 인사사무 규칙 제4조 참조)
-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
 -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 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
※ 증빙자료 : 임용장, 승급발령기록, 면직기록 등
※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,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,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,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

(나) 전력조회

- 공무원 경력(군복무경력 별도)
 -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
- 군복무 경력
 -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,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
 -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
 -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
 -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
 - 부사관(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)·준사관·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·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거나 기타 군간부후보생(무관후보생)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
- 유사경력
 -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함
 - 유사경력(외국경력 포함)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